예 산 총 칙

2023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66,473,407	31,994,202
일반회계	960,877,780	28,826,333
특별회계	105,595,627	3,167,869
공기업특별회계	92,879,329	2,786,380
상수도사업	36,347,197	1,090,416
하수도사업	56,532,132	1,695,964
기타특별회계	12,716,298	381,489
의료급여기금	2,739,534	82,186
발전소주변지역지원	307,500	9,225
밀양댐주변지역지원	245,628	7,36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47,371	4,421
수질개선관리	5,388,265	161,648
중소기업육성자금	3,000,000	90,000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888,000	26,64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붙임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붙임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003,725천 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49,500,000천 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와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